



: 2017-11-13

서울고등법원

제 1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6누78167 참여제한 및 환수 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제 1 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구합6498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13.
판 결 선 고 2017. 10.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경정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의 소송비용 중 원고와 경정된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0. 원고에게 한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및 같은 날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한 정부출연금 62,500,0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법원은 2017. 6. 19.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으로 경정함을 허가하는 결



정을 하였는바,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라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종전의 "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종전의 "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새로운 "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상대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협약 대상자는 전담기관이 피고, 주관기관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참여기관이 B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자: 원고)이었다. 】

○ 2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종합의견에서 2차년도 사업 수행 시 다음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식약처에서 제시한 항염증·면역증강 동물실험조건에 적합한 효능 검역 필요, ② 연구진행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전문성이 다소 미흡하여 발효전문가, 효능연구팀 등의 자문 또는 연구팀 보강을 검토" 등이다. 】



○ 2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2차년도 협약에서는 1차년도 연구평가결과의 종합의견을 반영하여 D를 위한 참여 기관으로 E대학교를 추가하였다. 】

○ 2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평가의 세부사유 중에는 ① 당초 사업 목표 및 내용을 협약 변경 신청 없이 'F'에서 'G'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하고(in vivo 상에서 면역 및 항염증 활성이 없어 항비만 및 항당뇨 활성으로 변경함), ② 연구개발시간의 부족과 생리적인 효능이 없을 것으로 주관기관이 인정함에 따라 최종 목표인 "H 증가 사료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9.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6. 반려견 대상 항염증, 면역증강 실험 미수행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평가 결과 '중단'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 2면 17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바. 피고는 연차평가 결과 중단에 따른 제재대상 및 환수 범위 등에 관하여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3. 28. 원고에게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항비만·당뇨 실험의 수행은 인정되나 최종 목표인 H에 대한 실험결과가 미흡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결과는 타당함'이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하였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차년도 정부출연금 62,500,00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3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5805 판결 등 참조). 】

○ 4면 5행의 "(1)"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과제는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8호에 따라 실시된 사업으로, 그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같은 법에 따라 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서,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89호), 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및 공통운영요령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구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39호, 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규율된다. 】

○ 4면 12행의 "않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는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입법 목적을 달리 하고 있음에 따라 기초연구 등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를 포괄하는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성실 수행에 따른 제재 감면 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사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주된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책임 있는 과제 참여 및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성실 수행의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제의 성실 수행에 따른 감면 여부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보아야 한다.】

○ 4면 12, 13행의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을 "공통운영요령"으로 고친다.

○ 4면 16, 17행의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을 "평가관리지침"으로 고친다.

○ 4면 19행의 "경우'라고"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경우'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중단(불성실): 연차보고서 미제출, 과제의 해당연도 목표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으로 】

○ 5면 5행의 "과학기술기본법"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설령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중단 평가의 경우에도 성실 수행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그 제11조의2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7. 5. 8. 대통령령 제28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는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1호),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2호),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3호)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여기에는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



는 점, 피고가 위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된 사업의 경우에는 성실 여부에 대한 평가의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통보서에 성실, 불성실 여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평가관리지침 제38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 중단 평가의 경우 성실 수행은 목표 달성을 전제로 하나 이 사건 과제의 목표가 달성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한 점, 당초 사업 목표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당초 이 사건 과제의 목표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 등의 구체적 평가사유는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여 성실수행 여부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불성실' 평가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5면 13행의 "사업목표의"를 "사업목표를"로 고친다.

○ 5면 17행부터 6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차년도에 수행하여 달성해야 할 연구개발의 목표는 피고의 승인 하에 'I'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I를 수행하였고, 2015. 8. 17.경부터 2016. 8. 17.까지 비만견을 대상으로 한 항당뇨 실험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연구개발의 결과가 '다소 미흡'을 넘어 '극히 불량'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6면 6행의 "증거에"를 "증거들과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 6면 16행부터 9면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② 아래와 같은 사업계획서의 과제명과 핵심키워드, 기술·시장 현황,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선행 연구 내용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사업목표는 'J'이라고 보아야 한다.

㉠ 1차년도 협약의 과제명이 이 사건 과제인 'J'로 되어 있고, 2차년도 협약에서도 위 과제명은 변경되지 않았다. 1·2차년도 협약 제1조는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 사업계획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1차년도 및 2차년도 사업계획서의 과제명도 1·2차년도 협약의 것과 같다.

㉡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핵심키워드가 '반려견, 면역 활성화, 항염 활성화, 기능성 사료, 천연허브'로 되어 있고,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에서도 면역 증진, 항염 효과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항산화, 항염 및 면역력 증가'와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를 얻었다는 선행 연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개발기술의 '정량적 목표 항목'에 관하여 1차년도 사업계획서에는 '항염 활성화'가 10%, '면역 활성화'가 10%, '마우스 모델에서 면역 및 항염증 활성화 평가'가 10%, '반려견에서 면역 및 항염증 활성화 평가'가 10%의 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2차년도 사업계획서에는 '항염 활성화'가 20%, '항당뇨 및 항염증 활성화 평가(마우스모델)'가 15%, 항당뇨 및 항염증 활성화 평가(반려견모델)가 10%의 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차년도 사업계획에서 면역 활성화 항목이 빠지게 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항염 활성화 항목이 남아 있고 그 비중이 10%에서 20%로 늘어났고, 항당뇨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된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목표 항목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관기관인 C가 2차년도 협약 체결 이전에 피고에게 2차년



도 연구개발 내용이 'I', 'K'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송부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2차년도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연구개발 목표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 1차년도 종합의견에서 2차년도 사업 수행 시 '식약처에서 제시한 항염증·면역증강 동물실험조건에 적합한 효능 검역 필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할 것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2차년도 사업도 항염증·면역 활성 평가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 원고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개발 과제는 'J'이라는 이 사건 사업목표와는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연구개발 목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 목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 목표의 변경 없이 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의 목표 변경만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 나아가 2차년도 협약 제9조 제3항, 제16조에 의하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통운영요령 제35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협약의 변경을 전담기관의 승인사항과 통보사항으로 구분하면서, 최종 목표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가관리지침 제32조 제6항 [별표 8]은 협약변경 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로 주관기관 요청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사업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전·후 비교표 및 세부 내역)를 규정하고 있다. C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업목표의 변경을 요청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를 승인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C가 피고에게 연구개발의 목표가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 목표가 변경되



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수행 결과 극히 불량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 내지 14, 19, 20, 22 내지 2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제 수행 결과가 미흡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2차년도 사업계획서에서 수행하기로 한 'I' 중 원고가 임의로 변경한 연구개발 내용인 항당뇨 활성 평가만 수행하였을 뿐 항염증 활성 평가를 당초 예정한 방법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L 중 당뇨견 실험은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년차 연차보고서에도 항염증 효능과 관련한 실험 수행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원고가 소장에서 마우스 모델에서 항염증 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은 1차년도 평가에서 항염증 활성 평가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이를 진행하는 것보다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 항당뇨 활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과제 성공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상세한 이유를 밝힌 점, 연구개발 보고서에는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항염증 평가의 진행 사항 및 결과에 관하여 항염증 효능의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기재하여야 할 것인 점, 과제에 대한 평가는 연차보고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항염증 활성 평가를 진행하고도 항염증 효능이 나타나지 않자 2차년도 연차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갑 제14호증,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는 평가위원들로부터 연구노트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평가위원들은 평가 당시 항염증 활성 평가의 실험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평



가위원들의 현장실태조사 시에도 연구원 1인만 참석하여 연구 및 실험 내용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연구노트도 제출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에도 연구노트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송 중에서도 비로소 이를 제출하고 있어 연구노트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의심이 간다.

④ 위 연구노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차년도 사업계획서상의 '질병의 positive sign(체중 증감율, 외관: 피모의 상태 및 설사의 유무, 부검 병변: 장점막의 비후, 출혈, 미란, 장간막 림프절의 크기 등)'에 대한 실험만 수행하였고, '항염증 및 면역력 활성화 평가(조직 염색, 면역조직화학염색, 박테리아 세포 수 측정, Real-time qPCR을 이용한 mRNA 정량, ELISA를 이용한 염증매개인자 지표 측정, Western blot analysis를 이용한 단백질 정량 등)'에 관한 실험은 수행하지 않았다. 장점막 비후나 대장 길이 같은 조직학적 변화가 없더라도 혈액학적, 면역학적 활성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당초 수행하기로 한 실험을 진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⑤ 원고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개발 내용은 이 사건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과제가 염증 질환을 가진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수행 계획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당뇨견 및 염증 보유견 확보 등에 문제가 있어 3차년도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사업계획서에 밝힌 대로 반려견 실험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어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입장을 번복하였다.

⑥ 이 사건 평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과제 수행 결과를 심사하여 이루어졌다.

2) 목표 미달성에 대한 책임 소재



가) 원고의 주장

① 주관기관인 C가 사료첨가제 개발을 위한 핵심 원료물질을 개발하고, 원고는 참여기관으로서 개발된 원료물질의 활성만을 평가하는 것인데, 과제 수행 결과가 미흡한 것은 주관기관이 개발한 원료물질의 효능이 부족한 데에 원인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

② 원고가 2차년도 사업계획서에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L'를 2차년도 협약기간 내에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주관기관이 실험을 위한 사료를 늦게 공급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계획에 정해진 바에 따라 면역 및 항염 활성 평가를 하기 위한 동물 실험을 할 협약상의 의무가 있다. 주관기관이 개발한 원료물질의 효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여기관의 위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약 변경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항당뇨 및 항비만 활성 평가로 과제 수행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원고는 과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과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여기관의 책임자로서 협약 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목표 미달성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관기관이 실험용 사료를 생산한 시점이 2015. 6. 30.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5. 7. 17.에서야 이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2차년도 협약기간 만료 시까지 실험대상인 당뇨건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평가 당시 3차년도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실험대상인 당노건의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험용 사료를 다소 늦게 공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 사업 목표 및 내용을 'F'에서 'G'로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항염증 실험은 사업계획서에서 예정한 방법이나 범위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당노건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과제인 염증 질환을 가진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은 당노건 및 염증 보유견 확보 등의 문제만을 밝힌 채 그 대안 제시 없이 아예 수행할 수도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는 협약상의 과제 수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제의 목표달성 미흡으로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할 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와 다름없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의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이라는 사유에 관하여 사업 수행의 성실도, 사업 실패 또는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의 존



부나 내용까지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과제 목표, 연구 수행의 구체적인 경과 및 결과, 참여기관 중 E대학교가 담당한 과제의 수행 내역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담당한 부분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단순히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나 연구개발의 결과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였으나 성실한 수행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목표 달성도 하지 못하였고 성실하지 못한 수행으로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공통운영요령 제49조 제1항 [별표 2] 사례별 기준 중 이 사건 처분사유인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에는 참여제한은 '해당자 3년', 환수는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 내에 있다.

④ 평가관리지침은 최종평가 결과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의 4단계로 나누고, 이 중 마지막 단계인 불성실 수행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단계는 모두 성실수행을 전제로 하고,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과제로서, 최종보고서 미제출,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에는 '불성실수행' 평가를 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목표를 일부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실수행 등 다른 평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평가위원들은 불성실수행 평가가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이 수반되는 평가라는 점을 알고서 그와 같은 제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수행 정도가 현저히 부족한지를 평가하게 되므로 이미 최종평가 단계에서 제재의 정도를 고려하였다.



⑤ 피고는 위와 같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대상 및 환수 범위를 특정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이들 심의결과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가능한 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 11, 12면의 그 별지 내용을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꾼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를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극히 불량'이라는 부분은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

②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6. 5. 31. 대통령령 제27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8항에서는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적 행정처분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사유'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위임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통운영요령 제49조¹⁾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인 규정이다.

1) 원고는 제50조로 기재하였으나 처분 당시 고시와 조항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같다.



③ 공통운영요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과제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2] 사례별 기준에서는 '과제수행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지만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규율하지 않고 있고, 평가관리지침 제38조 제6항에 의하면 과제 수행의 결과를 기준으로 성실, 불성실을 구분하고 있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 대해 '중단(성실)' 평가를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제1호, 공통운영요령 제49조 제1항 [별표 2]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기준' 중 '사례별 기준'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면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재량의 여지없이 참여제한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참여제한사유와 그에 대한 참여제한기간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명확성원칙을 어느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엄격히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법률에 어느 정도 보편적이거나 일반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한편 법률 규정에 그 뜻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표



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뜻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375 결정 등 참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한 공통운영요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라고 규정하여 법조항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위 조항 중 '극히 불량'이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불량하다'는 의미는 "물건 따위의 품질이나 상태가 나쁘다"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므로, 수범자는 그 문언의 의미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 사업 유형은 다양하여 과업수행 결과와 양상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인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③ 평가관리지침 제38조 제6항에 의하면 중단(성실) 판정은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중단(불성실) 판정은 "연차보고서 미제출, 과



제의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지침 [별표 9]는 연차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배점에 관하여 '해당연도 목표 달성'과 '차년도 계획'으로 공통지표를 크게 나눈 다음 공통지표에 대한 평가항목을 상세히 분류하여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의미는 개발목표의 달성정도, 기술적 수준, 개발방법의 적정성, 보고서의 질적 수준이 부족하여 중단(불성실) 평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2) 공통운영요령 제49조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제7호에서 대통령령에 그 밖의 참여제한 사유를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은 그 밖의 참여제한 사유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하면서 제7호에서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사유라도 협약을 위반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또한 적법한 참여제한사유에 해당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고시의 형태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통운영요령 제49조가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로 규정하여 그 대상을 최종결과인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참여제한사유는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라고 규정하여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 외에도 그 대상을 수행 과정상의 요소인 '불성실수행'을 독립적인 참여제한사유로 추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공통운영요령은 과제가 종료되기 전의 평가로서 연차평가, 단계평가 등을, 과제가 종료된 후의 평가로서 최종평가를 두고 있는바, 연차·단계평가에 따른 판정은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최종평가에 따른 판정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제40조의3 제2항, 제40조의4 제2항, 제40조의6 제1, 2항), 불성실수행은 과제가 종료되기 전에는 중단 판정에서만 평가요소가 될 뿐 나머지 판정에서는 평가요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과제가 종료되지 아니한 채 중단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성실수행이 독자적인 평가요소는 물론 독립적인 참여제한사유가 될 수 없고 중단과 결합하여 중단에 이르게 된 속성으로서 의미 있는 평가요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공통운영요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중 '불성실수행' 부분이 독립적인 참여제한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중단 판정을 받은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 사유는 독립적인 참여제한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참여제한사유는 공통운영요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중 이를 제외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법령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3) 공통운영요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자기책임원칙 위반 여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은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통운영요령 제49조 제1항은 "귀책사유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일반기준 제1항은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참여제한조치 및 사업비 환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내용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제1호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화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제2조 제2호, 제7호 참조), 기술개발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를 달성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협약대상자 선정 시에는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수행과제의 수행능력, 추진방법, 시설확보 정도 및 장비구축의 타당성, 사업비 및 수행기간의 타당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통운영요령 제28조), 협약 체결 이후에도 진도점검·연체평가·단계평가·특별평가·최종평가 등으로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계속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한정된 정부 출연금이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처분에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를 요구하



고 있는 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익적 목적과 한정된 정부출연금에 대한 관리·배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제1호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참여제한사유의 경우에 대하여 3년의 참여제한 기간을 규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법원에서 경정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박재우

 판사 정승규



관계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 7. 22. 대통령령 제27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7. 3. 14. 법률 제14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제품·서비스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7.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



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7. 그 밖에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6. 5. 31. 대통령령 제27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2.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2년(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5년)

3.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3년

4.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 2년 이내

5.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의 경우: 5년 이내

6.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의 경우: 3년 이내

6의2.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의2의 경우: 1년

6의3.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의3의 경우: 3년 이내

7.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나목의 경우: 1년

8. 제1항제6호가목의 경우: 2년 이내

9. 제1항제7호의 경우: 2년 이내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89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1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22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하” 촉진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하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신규평가)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12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 적정성 및 수행하는 기간의 타당성
6.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지역산업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실수행 과제는 예외로 한다.)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보안관리요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9.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가. 기초연구단계
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수행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
다. 기반조성사업, 기업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제35조(협약의 변경)

② 주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협약변경을 위한 승인 요청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연차별 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비 이월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함). 관리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3호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정책지정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주관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제40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①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연차평가
2. 단계평가
3. 최종평가
4. 특별평가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및 국비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3(연차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차별 협약 과제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로 판정한다. 이때, 조기종료(성실수행)는 1차년도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중단(성실)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④ "중단(성실)" 또는 "중단(불성실)" 으로 판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36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4(단계평가)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로 판정한다.

제49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2"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



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국비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별표 2]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요령 제49조 관련)

① 일반 기준

- ①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 ② 국비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국비가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과제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국비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 ③ 동일 과제에서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하고, 국비 환수는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국비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 ④ 주관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일 경우는 과제 중단이 원칙
 - *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관기관은 귀책이 없고 참여기관이 문제를 발생한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심의
- ⑤ 문제과제의 국비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 ⑥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사례별 기준

- ① 수행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 보고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과제가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국비 전액 이내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2016. 5. 12.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3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연차평가)

⑥ 연차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연차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된 경우,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3. 중단(불성실) : 연차보고서 미제출, 과제의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4.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
6.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연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단, 1차년도 평가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⑦ 연차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최종평가)



- ⑦ 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혁신성과 : 최종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와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
 2. 보통 : 최종평가 결과 75점 이상 90점 미만인 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와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
 3. 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나 수행결과와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 등
 4. 불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과제로서, 최종보고서 미제출,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와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별표 8>

협약변경 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변경 내용	제출 서류
공통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과 협약변경 신청서 ○ 관련 증빙 서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요청 공문 ○ 변경승인요청서(사업의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전·후 비교표 및 세부 내역)

<별표 9>

연차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공통지표	해당연도 목표 달성	개발목표달성 정도	○ 개발목표 달성정도 ○ 계획대비 목표의 달성정도	40
		기술적 수준	○ 기술적(성능) 수준 ○ 핵심기술의 기술적(성능) 수준정도	
		개발방법의 적정성	○ 개발방법의 적정성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20
		보고서의 질적수준	○ 보고서의 적정성 ○ 핵심적인 개발내용의 포함여부	



차 년 도 계 획	목표의 명확성	○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10	40
	추진전략의 적정성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연구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10	
	사업성	○ 목표달성 가능성	○ 수행기간 내 목표달성가능성 ○ 지역선도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 ○ 해당개발품목의 지역산업선도가능성 ○ 개발 초기년도에 비해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화가능성 및 시장전망 ○ 판로개척가능성	10	
	파급효과	○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	○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수입단가인하효과, 기술향상정도, 고용창출효과 등	10	
합계				100	

※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내용, 평가지표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음. 끝.